안세재경저널 회원용 · 2024년 9월 11일 (수) · 주간 제37·38호 · 통권 제1692·1693호 · 법인세 신고시 참고할 판례 구독료 월 30000원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경영박사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4/ 9/ 11 통권 1692·1693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 추석 연휴로 인하여
1692·1693호 통합 발행되었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법인세 신고 시 참고할 해석·판례 등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통합적 사고를 위한 6 Capitals의 이해
- 부동산매매의 취득일과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이나 기타 특수한 경우는 실제사용일·등기일임
-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 법인세 신고 시 참고할 해석·판례
-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혜택 45만 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 자녀장려금 전년보다 2.3배 많은 81만 가구 혜택
- 세금포인트와 함께 산림 휴양·생태 체험을 떠나보세요
- 혹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나요?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사망한 대표자에게 소득처분되어 발생된 소득세는 상속자가 받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는 납세의무 있음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특수관계자 가족간 금전 차용의 증여의제(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4〉

개념, 구분		특수관계 타인(자녀 등 직계존비속)	제3타인(비특수관계자)
금전무상, 저리차용		무조건 증여의제함 (정당사유 있어도 증여임)	정당한 사유 없으면 증여 (정당사유 있으면 증여 아님)
적정이자율의 범위		연 4.6%	연 4.6%
증여과세제외 기준금액		거래건당 1천만원	거래건당 1천만원
거래금액 사례	1억원 무상 1년	1억원×4.6% = 460만원(증여 아님)	좌동 (정당사유 없는 경우)
	1억원 무상 2년	1억×4.6%×2년 = 920만원(증여 아님)	좌동 (정당사유 없는 경우)
	1억원 무상 3년	1억×4.6%×3년 = 1,380만원(증여)	좌동 (정당사유 있으면 증여 아님)
	2억원 무상 2년	2억×4.6%×2년 = 1,840만원(증여)	좌동 (정당사유 있으면 증여 아님)
	1억원 2%×3년	1억×(4.6% - 2%)×3 = 780만원(증여 아님)	좌동 (정당사유 있으면 증여 아님)
	2억원 2%×3년	2억×(4.6% - 2%)×3 = 1,560만원(증여)	좌동 (정당사유 있으면 증여 아님)
	3억원 1.3%×1년	3억×(4.6%-1.3%)×1 = 990만원(증여 아님)	좌동 (정당사유 있으면 증여 아님)
차용 4.6% 이상		증여 아님(이자소득과세)	증여 아님 (정당사유 있으면 증여아님)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종공인회계사 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타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92·1693호 / 주간 37·38호 2024. 9. 11. (수)

·발 행 인 : 이윤선
·제 작 : ㈜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④ 즉답(010-2672-2250)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⑧ CEO·CFO 경영에세이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목 차

※ 추석 연휴로 인하여 통권 1692·1693호가 통합 발간되었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특수관계자 가족간 금전 차용의 증여의제(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4)	표지
CEO의 경영산책	통합적 사고를 위한 6 Capitals의 이해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고민할까?)	- 수출신고 시 수출거래 구분 및 회계처리, 부가세신고 방법 문의	5
	- 회사 출입구 번호인식시스템(주차차단기) 비용귀속부서 문의 - 구매확인서, 영세율세금계산서 관련 질의	6
	- 납부불성실가산세 문의	
눈에맞는절세미인	부동산매매의 취득일과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이나 기타 특수한 경우는 실제사용일·등기일임	7
매일절세재무요점	-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 및 세액공제 비율	9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10
직장인Survival	온도와 설득효과	11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유권해석)	-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양도당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사전법규법인-817, 2023.12.13)	12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이월액은 자산 처분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한도 적용함 (사전법규법인-518, 2023.12.07)	13
세정뉴스와 해설	2024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14
마케팅 Tax consulting	사망한 대표자에게 소득처분되어 발생된 소득세는 상속자가 받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는 납세의무 있음	13
세무정보	-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15
	- 법인세 신고 시 참고할 해석·판례	16
	-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혜택 45만 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33
	- 자녀장려금 전년보다 2.3배 많은 81만 가구 혜택	39
	- 세금포인트와 함께 산림 휴양·생태 체험을 떠나보세요	43
노무정보	- 혹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나요?	46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5

통합적 사고를 위한 6 Capitals의 이해

이 재 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최고 경영진이 기업이 가치를 창출에 사용하는 다양한 자원과 상호 관계를 평가함에 있어서 국제 <IR> 프레임워크의 6개의 자본 유형(capitals)은 유용한 준거점이 될 수 있다[1].

1) 자본 (Capitals)은 비즈니스 모델 내에서 조직의 비즈니스 활동 및 산출물을 통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변형되는 투입물로서 조직의 성공을 좌우하는 가치 축적이다.

이는 기업 혁신을 위한 통합적 사고 (Integrated thinking)나 지속가능성 보고를 위한 국제적 통합보고서의 작성에 기초가 된다. 6개 지본 유형에 대한 이해는 글로벌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분석 및 이용 등에 근간이 된다.

기업에 가치의 동인(driver)들은 서로 독립 분리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위험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이 서로 다른 자본의 사용에 자본간에 상충(trade-off)관계가 있다.

- 조직이 사용하고 영향을 주는 자원과 자원 사이의 관계를 프레임워크에서는"자본(the capitals)"이라 칭한다.
- 위와 같은 자본은 조직이 단기/중기/장기적인 가치창출을 위해 자본 및 외부 환경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 자본은 조직의 활동 및 산출물을 통해 증가, 감소, 변형되는 가치의 저량(貯量, stocks)이다. 자본은 재무/ 제조/ 지적/ 인적/ 사회·관계/ 자연 자본으로 분류한다.
- 조직의 가치창출 능력은 재무자본 제공자에게 재무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다양한 활동, 상호작용 및 관계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와 사회 전반을 위해 조직이 창출하는 가치와도 연계된다.

◉ 자본의 저량과 유량

- 모든 조직은 성공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자본을 이용한다. 자본은 재무/ 제조/ 지적/ 인적/ 사회적·관계/ 자연 자본으로 구성된다. 통합보고서를 준비하는 조직이 이러한 분류기준을 반

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2].

2) INTERNATIONAL <IR> FRAMEWORK, JANUARY 2021, p. 18.

- 자본은 조직의 활동과 산출물로 인해 증가, 감소, 또는 변형되는 가치의 저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조직의 재무자본은 조직이 이익을 낼수록 증가하고, 인적자본의 질은 직원 교육이 강화될수록 향상된다.
- 자본의 전반적인 저량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자본이 증가, 감소, 또는 변형되면서 자본 간 그리고 자본 내에는 지속적인 흐름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조직이 직원 교육을 통해 인적자본을 향상되지만, 교육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해 재무자본은 줄어든다. 위와 같이 자본 간에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변형이 일어난다.
- 총체적 관점에서 조직은 가치창출을 목표로 하지만 이를 위해 특정 자본의 가치는 줄어들 수도 있다. 많은 경우에 순효과가 가치의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직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의 효과는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따라 교육이 효익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 자본의 분류와 개념[3]

- 국제 통합보고서의 프레임워크의 목적상 자본은 다음과 같이 분류 및 정의된다.
  - 재무자본 (Financial Capitals) :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 자금을 의미한다.
    기업이 재화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업에 외부로부터 차입이나 투자, 경영활동 등 으로 획득된다.

3) ibid, p. 18-19.

- 제조자본 (Manufatured Capitals)
  조직이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조물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건물, 기계장치, 기반시설 (도로, 항구, 다리, 폐기물과 폐수 처리 시설 등)
- 지적자본 (Intellectual Capital)
  조직의 지식 기반 무형자산으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 특허, 저작권, 소프트웨어, 권리, 라이선스 등의 지적 재산
  - 암묵지, 시스템, 절차, 프로토콜 등의"조직 자본"
- 인적자본(Human Capital)
  사람의 역량, 능력, 경험, 혁신에대한 의욕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조직의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방식, 윤리의식과 연계 및 지지
  - 조직의 전략을 이해하고 발전, 실행시킬 수 있는 능력
  - 리더십, 관리, 협력을 통해 프로세스, 제품, 서비스를 발전시키려는 충성심과 의욕

• 사회·관계자본 (Social and relationship Capital)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그룹, 다른 네트워크 간 또는 내에서의 제도 및 관계를 말한다.

개인과 단체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정보를 교환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사회관계자본은 다음을 포함한다.

- 공동 규범, 공통의 가치나 행동
-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외부 이해계자와의 신뢰 및 참여 의지
- 조직이 발전시킨 브랜드 및 명성과 관련된 무형자산
- 조직 운영에 대한 사회적 영업권

• 자연자본(Natural Capital)

조직의 과거, 현재, 미래의 번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생 가능하거나 재생 불가능한 일체의 환경 자원 및 프로세스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 대기, 물, 토지, 광물, 삼림
-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건강

자연 자본은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자연 자원과 생태계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숲, 물, 토양, 공기 등의 자연 자원뿐만 아니라 탄소 흡수, 물 정화, 생물 다양성 유지와 같은 생태계 서비스도 자연 자본에 포함된다. 모든 자본이 모든 조직에게 같은 정도의 관련성을 갖거나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 최근 글로벌 금융의 동향

최근 UN환경계획 등 국제기구 등에서는 기업의 재무자본 및 제조자본, 기후변화를 넘어서 생물의 다양성과 같은 자연자본(Natural Capital) 공시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고 있다[4].

우리 기업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요구된다.

4) 자연자본 공시' 제도화 예상…민관 머리 맞댄다, 에코타임즈, 2024.3.6.

수출신고 시 수출거래 구분 및 회계처리, 부가세신고 방법 문의

Q

수출거래 중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상황 : 국내고객과 판매계약, 물품대금도 국내고객으로 부터 수령 예정
   국내고객에서 물품 배송은 본인들 해외 법인으로 배송을 요청함
2. 우리회사에서 고객의 해외법인으로 배송할 경우, 수출신고시 거래구분은 어떤걸 선택해야 할까요? (92-무상? or 11-일반형태 수출? or 다른 코드?)
3. 국내고객에게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요?
4. 그리고 수익인식시점(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선적일자인지? 아니면 임의의 다른일자로 가능한지?
5. 영세율이 맞다면, 부가세신고시 영세율 근거자료로는 어떤자료를 제출해야할까요?
6, 영세율이 맞다면, 부가세신고시 영세율 매출명세서에서 어떤 조문의 어떤 내용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A

1. 수출신고 거래구분은 내국세와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며 관세문제이므로 저희가 아닌 관세청 등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 국내고객과의 거래이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재화 공급시점은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다른데, 선적시점(인도일)이 일반적인 공급시기에 해당됩니다.

회사 출입구 번호인식시스템(주차차단기) 비용귀속부서 문의

Q

회사 출입구 번호인식시스템(주차차단기)과 CCTV 설치에 대해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비용귀속부서 판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회사 공통으로 사용됨에 따라 공장전체의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와 관리비를 매출원가로 넣어야하는지

2)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판매관리비로 처리해야하는지

회사 출입구 번호인식시스템의 비용귀속은 세법이나 회계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귀사가 자체 판단하여 결정하시면 되는데, 매출원가보다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구매확인서, 영세율세금계산서 관련 질의

Q 1. 실질적으로 명확히 수출에 해당할 경우, 구매확인서 없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2. 구매확인서 금액이 영세율 공급가액보다 클 경우, 차이 조정이 필요한지?

A 1.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이 없으면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 구매확인서 금액과 차이가 발생되어도 차이조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문의

Q 2021년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납부하는데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2.14 이전에는 일당 0.025% 의 요율, 그리고 그 이후에는 0.022% 의 요율로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①'22.04.01~'24.02.13 → 0.025%, ②'24.02.14~'24.9. 신고일까지 → 0.022%
이 경우 ①, ② 합산하여 신고납부 하면 될런지 아니면 전체 기간(20'4/1~신고일까지)에 대해 0.025%를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A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24호,2022.02.15) 부칙 제6조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이 영 시행 이후 납부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매매의 취득일과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이나 기타 특수한 경우는 실제사용일·등기일임

상담실 백종훈 차장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은 동일 장소에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다른 일반재산처럼 인도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거래대금 또한 커서 계약시점부터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오래 걸린다.

이러한 특성때문에 현행 세법에서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양도시기를 다른 일반재산에 비해 명확하고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취득일과 양도일은 그 시점선택에 따라 양도소득귀속연도의 차이, 적용세율차이, 합산되는 소득금액과 다단계누진세율차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등 많은 면에서 세액크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취득일과 양도일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대금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

토지, 건물 등의 매매에 있어서 취득일과 양도일은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하며, ②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며, ③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한다.

특수한 거래에서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

① 미완성·미확정된 자산

건설중인 아파트가 대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가 "완성된 날(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② 교환하는 경우

교환가액에 차이가 없으면 교환성립일이 취득·양도일이 되며, 차액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청산한 날 또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이 취득 또는 양도일이 된다.

③ 토지수용 및 공탁의 경우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수용되거나 양도되는 경우,

- 협의 성립하거나, 재결·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하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며, 보상금수령전 소유권이전 등기시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양도일이며,
-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진행중인 경우는 소유권이전일과 변동보상금확정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양도일이 된다.

④ 가등기후에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를 이행하는 경우는 본등기한 날이 그 취득 또는 양도일이 된다.

⑤ 소유권이 환원된 자산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초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다.

⑥ 환지처분시 양도일과 취득일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이다.

하지만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익일을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⑦ 공동사업의 현물출자

공동사업에 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 또는 양도일이 된다.

365 매일절세재무요점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 및 세액공제 비율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50세 미만 (퇴직연금 포함)	50세 이상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900만원 (연금저축 납입한도 600만원)		15%
4500만원 초과			12%

화 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 기준

	시가표준액	면적	시설
단독주택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연면적 331㎡ 초과	-
		대지면적 662㎡ 초과	-
		-	200kg 초과 엘리베이터
	-	-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공동주택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건축물 연면적 245㎡ (복층 274㎡)	-

水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木 AI 적용한 홈택스 고도화 전략

	기존	개선
MY홈택스	신고·납부내역 등 일반정보 제공	개인·사업자 등 유형별 필요 서비스 제공
메뉴 단순화	메뉴화면 너무 많아 불편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메뉴만 제공
대화형 화면	복잡한 서식과 어려운 세법 용어	대화형 화면으로 만들어 누구나 쉽게 접근
검색기능	불편한 검색 기능	생성형 AI 기술 적용
AI 상담원	대기시간 많아 불편	최적 답변 생성, 음성발화 기술로 안내

온도와 설득효과

기온이 22도가 되면 맥주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한다. 수영복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은 24도부터,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은 27도, 빙수가 인기를 누리는 것은 29도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기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설득에도 기온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리노이주 엘머스트대 심리학자 커닝햄 교수는 여름에는 서늘한 날에, 여름에는 포근한 날에 설득하기 쉽다고 한다.

미주리대 앤더슨 박사도 방의 온도를 다양하게 바꾸며 실온이 우리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실온이 높아질수록 초조해하고, 같은 방에 있는 사람에게 적의를 보이는 정도가 1.5배 높아졌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면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운 날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다. 그런 날에는 상대의 심리상태가 불안정하여 좀처럼 당신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터이기 때문이다.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사망한 대표자에게 소득처분되어
발생된 소득세는
상속자가 받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는
납세의무 있음

법인의 대표자(피상속인)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함에 따라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 소득처분 대상금액만큼의 소득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4, 2024.02.20

▌질 의

• 쟁점법인은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23.@.@@. 현재 주주임원단기채권 ㅁㅁ백만원 및 해당 채권에 대한 미수이자 ㅁㅁ백만원(주주임원단기채권 및 미수이자를 이하 "가지급금등")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질의인의 직계존속이며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AAA(이하 "피상속인")에 대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임

○한편, '23.OO.OO.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쟁점법인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등을 비용(대손상각비)처리하였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제9호가목 및 「법인세법 집행기준」67-106-9에 따라 위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피상속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예정임

질의

소득처분으로 인한 (수정)신고 전에 소득처분 대상자(피상속인)가 사망하는 경우에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및 상속인이 위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회 신

법인의 대표자(피상속인)가 사망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함에 따라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 소득처분 대상금액만큼의 소득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상속인은 「국세기본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위 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처분되는 금액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양도당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사전법규법인-817, 2023.12.13

▌질 의

• 양도당시 재산세의 과세유형이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보유기간 중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지

▌회 신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사

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의 현황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의3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이월액은 자산 처분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한도 적용함

사전법규법인-518, 2023.12.07

▌질 의

- 승계자산 처분손실 이월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 시 이월결손금에 적용되는 공제 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 중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을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자산 처분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은 100분의 100)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출연받은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서면상속증여-3222, 2023.12.14

▌질 의

-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종교단체에게 출연하는 경우 출연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무관청은 어디인지

▌회 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그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2013.02.15. 이후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관할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2024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정부는 지난 7.25.(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후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7.26.~8.5.) 및 입법예고(7.26.~8.9.)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금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관세법, 관세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 청구 허용 특례 적용 대상에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위 15개 법률안은 9.2(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19일까지… 고령자 등 자동신청 1년 새 4배 증가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오는 19일까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다. 근로소득자여도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때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2일부터 모바일 및 우편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장려금 지급액은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르며, 안내문 신청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장려금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및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 빠르고 쉽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사기문자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3%p 낮춰야".. .한경연, 세법개정안 개선 촉구

정부가 기업친화적인 세제 환경을 조성해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등 '2024 세법 개정안'을 개선·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0일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기본방향이 경제 주체와 시장의 역동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개선을 제언했다.

한경연은 개정안에서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기업 경쟁력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기업 관련 세제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개정안은 다소 소극적이라고 본 것이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3%포인트 인하하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확대 등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경연은 이번 개정안에서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이 확대되고 공제가 상향 조정됐지만,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렸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보다 높다고 짚었다.

또 세법 개정안에 법인 기부금이나 공익법인 세제 관련 개선 내용이 담기지 않은 만큼 법인 기부 활성화를 위해 추가 기부금 공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 국세청, 2024. 9

정부는 '24.8.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0%,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조치를 '24.10.31.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

(단위 : 원/ℓ)

유종	인하 전 탄력세율	'21.11.12. ~ '22.4.30.	'22.5.1. ~ 6.30.	'22.7.1. ~ 12.31.	'23.1.1. ~ '24.6.30.	'24.7.1. ~ 10.31.
		△20%	△30%	△37%	휘발유△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37%	휘발유△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30%
휘발유	820	656 (△164)	573 (△247)	516 (△304)	615(△205)	656(△164)
경유	581	465 (△116)	407 (△174)	369 (△212)	369(△212)	407(△174)
액화석유가스 (LPG)부탄	203	163(△40)	142(△61)	130(△73)	130(△73)	142(△61)

개정안은 중동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64원/리터(ℓ), 경유 △174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24.9.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인세 신고 시 참고할 해석.판례

- 국세청, 2024. 8

가. 특수관계자 거래

❖ 서면-2023-법규법인-0476, 2023,8,28.

부당행위 판단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이나, 우회적인 행위 내지는 그 밖에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는 배제시킨 경우는 별도 판단함

❖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1605, 2022. 2. 10.

증여인이 주식을 직접 양도할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통상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중간에 수증인들을 개재시킨 것이고, 이는 실질적으로 증여인이 주식발행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출자금을 회수한 금전으로 주식발행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거래를 가장한 것이므로 거래의 실질에 따라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야 함

❖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0241, 2022. 10. 27.

원고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특허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대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한 건과 관련하여 쟁점특허권은 그 내용상 원고 내 설비 및 자원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오직 대표이사의 아이디어만으로 완성된 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앞서 본 원고 내 기술인력 및 설비상황 등을 더하여 볼 때 대표자 개인이 단독으로 발명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2022. 8. 24.

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결산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미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5, 2022. 10. 20.

3년간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최종시세가액(할증하지 않음)임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52, 2021. 11. 30.
내국법인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제기부금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02, 2021. 11. 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에 금전의 저리 대부를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14, 2021. 11. 4.
내국법인이 양도한 유형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감정가액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음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83, 2021. 10. 15.
내국법인이 손해배상채권 성격으로 계상한 미수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2016두54213, 2019. 5. 30.
원고회사와 원고회사의 임원들인 이 사건 이사들과 함께 AA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일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주식수 비율대로 나누어 가진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과 관련없는 이 사건 이사들 양도부분은 원고회사가 받았어야 할 경영권 프리미엄 중 일부를 분여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나. 업무용승용차

❖ 서면-2022-법인-4057, 2023. 6. 1.
내국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내국법인(임차법인)을 승낙피보험자(실지 보험수혜자)로 하는 내용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해당 승용차를 인수받는 시점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전용자동차보

험의 가입시점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13, 2021. 9. 29.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파견직원에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업무용 승용차를 제공하는 경우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서 시부인 계산 대상에 해당함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95, 2020. 10. 19.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5, 2020. 6. 12.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면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기 전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해당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금액을 먼저 계산한 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98, 2017. 9. 26.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체결한 후 월 임차료를 안분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납부한 임차료에 업무사용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80, 2017. 6. 28.
임원을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사적 경비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51, 2020. 4. 23.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제116조제1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임직원 명의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전표를 촬영하여 자체서버에 저장하는 한편,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거래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서버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을 같이 보관하여야 함

❖ **서면-2019-법인-1237, 2019. 9. 18.**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로서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지 않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018-법인-3221, 2019. 8. 1.**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86, 2023. 10. 12.**

(쟁점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개별손금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각각 귀속시키고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동일한 업종이면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또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 할 수 있는 것임

(쟁점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022-법인-5631, 2023. 8. 18.**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에서 '회수기일'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

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임

❖ 서면-2022-법인-5580, 2023. 8. 3.

내국법인이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제24조 제5항에 따른 기부금 이월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24조(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 전의 것)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7, 2022. 10. 26.

내국법인이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나,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및 학교법인의 인건비·관리운영비로 사용된 금액은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3, 2022. 10. 20.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합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4, 2021. 12. 30.

주식발행법인이 결손보전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이와 동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기존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한 법인은 무상감자 전 주식의 장부가액을 유상증자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6997, 2021. 12. 30.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A법인')과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 간에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 등의 사유로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 등이 진행되던 중 상호 합의에 따라 모든 법적 분쟁을 취하하고 A법인이 B법인에게 합의금(이하 '쟁점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쟁점합의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원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달리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명확히 확정되지 않아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합의에 이르는 과정 및 합의내용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쟁점합의금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819, 2021. 12. 10.
외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적용할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화를 기부했을 때의 해당 내국법인의 장부가액에 적용된 환율임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2, 2021. 12. 7.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6과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며 해당 기업부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제10항제4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72, 2021. 10. 27.
해외투자법인이 청산할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은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나,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 2021. 5. 25.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30, 2021. 3. 4.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게 양도한 주식의 양도손실을 이연한 후 해당 양도손익이연 자산이 소각되는 것은 이연된 양도손실의 환입사유에 해당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4, 2020. 9. 4.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은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전액임
바. 부동산 양도차익

❖ 서면-2022-법규법인-5229, 2023. 7. 27.
내국법인이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로서 양수인이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물건의 판단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양수인이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2022-법규법인-3396, 2023. 10. 18.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수익성 제고를 위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임대업을 추가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포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2022. 8. 24.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2010년에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관련 부칙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79, 2021. 10. 27.
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9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6001, 2021. 10. 1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를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없음

사. 합병·분할

❖ 서면-2023-법인-0778, 2023. 9. 26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이후 내국법인이 당초 적격물적분할로 설정한 압축기장 충당금은 「법인세법」제4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4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제1호의 '최초 적격구조조정'이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최초의 적격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임

❖ 사전-2023-법규법인-0518, 2023. 12. 07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 중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을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자산 처분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은 100분의 100)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5, 2022. 2. 2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승계한 자산을 최신 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75, 2021. 12. 28.
내국법인('합병법인')이 「법인세법」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을 한 경우로서 합병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쟁점 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단서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쟁점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외의 금액을 먼저 감액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62, 2021. 11. 29.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 등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해당 승계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41, 2021. 10. 27.
내국법인이 지주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일체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물적분할과 같은 날 분할존속법인이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적격합병 요건 중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고용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부분 중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임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689, 2021. 8. 24.
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함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672, 2021. 6. 21.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949, 2020. 11. 16.

분할법인이 다수의 사업부문을 「법인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물적분할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1개 사업부를 최초로 적격물적분할함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따라 당초 손금에 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39, 2020. 3. 2.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과세연도 중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본 해석사례는 2019.9.4. 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27, 2019.9.4. 참조)

아. 공동경비 및 가산세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05, 2021. 3. 17.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자동차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들과 자동차금융 관련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비출자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출자공동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인들이 통합플랫폼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동경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에서 해당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다만, 통합플랫폼 관련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3호 나목 괄호 안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통합플랫폼을 통해 실행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019-법인-4570, 2020. 3. 13.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비출자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경비에 대해 직전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선택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하는 것임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80, 2020. 1. 9.
각각의 법인들이 보수약정에 따라 겸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임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91, 2021. 10. 27.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적용 이후) 내국법인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709, 2021. 7. 16.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35, 2020. 2.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4항제2호가목(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중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56조제1항(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따른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않는 것임

자.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 서면-2022-법인-2191, 2022. 08. 16.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자산양도차익에서 공제되므로, 과세형평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중 자산양도차익 상당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5, 2022. 08. 16.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92, 2021. 3. 23.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해당하며,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공제제한 대상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차.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세액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5, 2023. 3. 6.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91, 2023. 09. 06.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의 소득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005, 2023. 09. 27.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 공제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에 대해 동법동조제1항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하고 동법동조제5항에 따라 동법동조제2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었고 그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동법시행령 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동법 제29조의7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동법동조제2항 후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부하였어야 할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 08. 28.**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청년」최초공제 적용 이후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청년」은 감소한 경우 「추가공제」계산 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추가공제 적용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13, 2023. 07. 04.**

해당 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6의2에서 규정하는 '금속계의 원료' 제조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물질의 상태는 판단 요건이 되지 않음

❖ **서면-2022-법인-4398, 2022. 11. 17.**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잔여기간 감면이 중단된 후 변경된 대표자가 기존 법인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도 대표자가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규 설립 법인이 사업의 승계, 확장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22-법인-2973, 2022. 11. 21.**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란 같은 법 제26조의 요건을 갖춘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임

❖ **서면-2022-법인-1041, 2022. 12. 0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함)의 범위에는 축산업자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축 분뇨처리 대행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생산하거나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포함됨

❖ **서면-2021-법규법인-4605, 2022. 1. 20.**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4호에 따른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을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로 배분함

❖ **서면-2022-법인-1043, 2022. 3. 16.**

감면업종으로 창업하여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 서면-2021-법규법인-4819, 2022. 5 .26.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여부 판단시 외국정부는 외국법인의 범위에 포함됨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9, 2021. 8. 18.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1 및 별표2(이하 "중소기업기준")가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중소기업기준의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7, 2021. 6.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 소기업요건을 충족하던 개인사업자가 2016.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 전환 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3.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동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66, 2021. 3. 30.
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납부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국민연금 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만 60세 이상 내국인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20-법인-5698, 2021. 3. 15.
2020년에 창업한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626, 2021. 1. 7.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각종 지원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61, 2020. 9. 29.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에는 전환된 법인이 당초 개인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더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서면-2018-법인-3405, 2020. 9. 28.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과 그 외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감면요건은 구분기장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총자산 및 매입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창업 당시 수도권과밀권역 외에 본점을 두더라도 지점이 수도권과밀권역 내에 있다면 이는 수도권과밀권역 내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487, 2020. 9. 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같은 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81, 2020. 8. 31.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4항에 따라 전환 후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019-법인-2005, 2020. 2. 27.
수도권과밀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 영위하는 경우,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1356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따라 20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 12. 24.
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9-법인-1741, 2019. 9. 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벤처기업이 벤처확인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연구개발비 지출여부에 관계없이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 다른 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1, 2019. 5. 2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로서, 당초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심 2018-서-1956, 2018. 6. 29.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한 인터넷홈페이지는 청구법인의 사업에서 중요한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법인의 사업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토대로 작가들의 원고를 출판하는 내용이므로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일부 사업내용이 기존과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의 확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창업이 아님

카. 외국납부세액공제

❖ 서면-2021-국제세원-7318, 2022. 6. 27.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과의 수익인식시기 차이가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98, 2022. 2. 23.

「법인세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중 이월공제를 배제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29, 2018. 9. 6.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

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국외원천소득에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902, 2016. 10. 25.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증가하였을 경우 증가한 해당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반영하여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재산정한 결과 증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1, 2014. 10. 14.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타. 미환류소득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65, 2023. 10. 05.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이월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23법규과-2496, 2023. 11. 17.

「조세특례제한법」이 법률 제19199호(2022.12.31.)로 개정됨에 따라 제100조의32제1항의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6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을 차감한 잔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8, 2023. 09. 05.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0, 2023. 06. 28.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5조 등에 따라 적립한 금액 중 이익금(이월손실금 보전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조세특례제

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3, 2022. 8. 24.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재차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매 사업연도마다 이월결손금 차감 가능
(2안) 매 사업연도마다 이월결손금 차감 불가능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 2022. 8. 23.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 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 적립급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 2022. 8. 22.

내국법인이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만일 4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그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2021. 8. 19.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혜택 45만 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 국세청, 2024. 9

□ (신청대상)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o 2024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9월 2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모바일·우편)하였습니다.

* '23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 인원 117만 가구

| 가구 유형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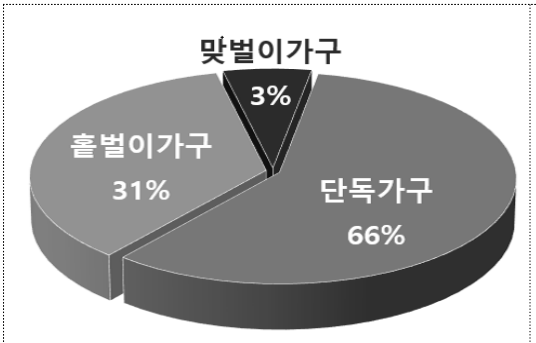

| 연령대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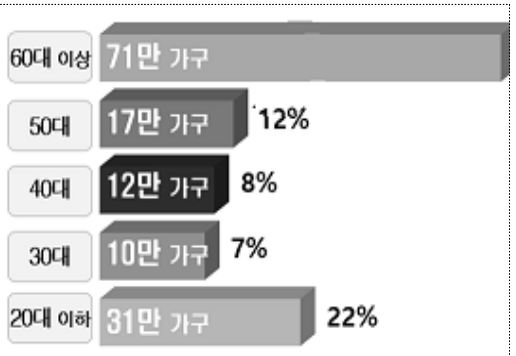

□ (신청·지급기간)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o 다만, 2024년에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5. 1.~5. 31.)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및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드리며, 신청안내 대상자가

모바일·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하시면 상담사가 도와드립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운영기간 : 9. 2.~9. 19.(평일 09:00~18:00)

□ (자동신청 적용)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23년) 65세 이상 → ('24년) 60세 이상으로 확대

○ 2024년 3월까지 반기신청에 사전 동의한 45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21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하겠습니다.

| 반기 자동신청 사전동의자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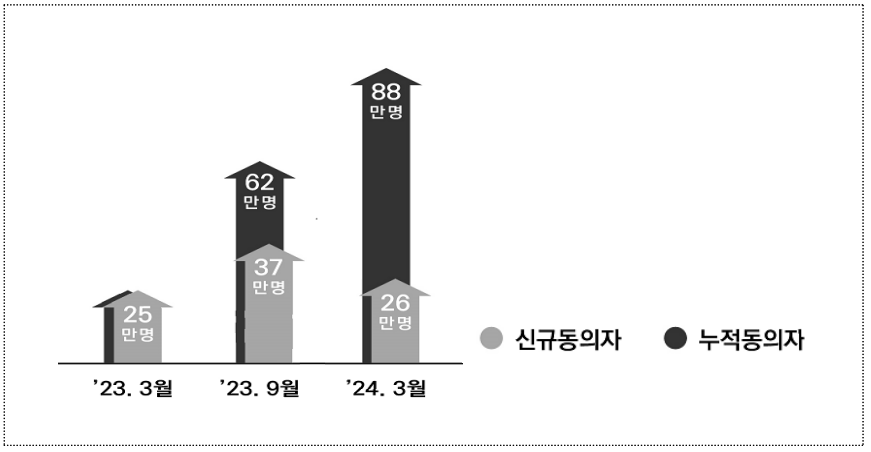

| 자동신청자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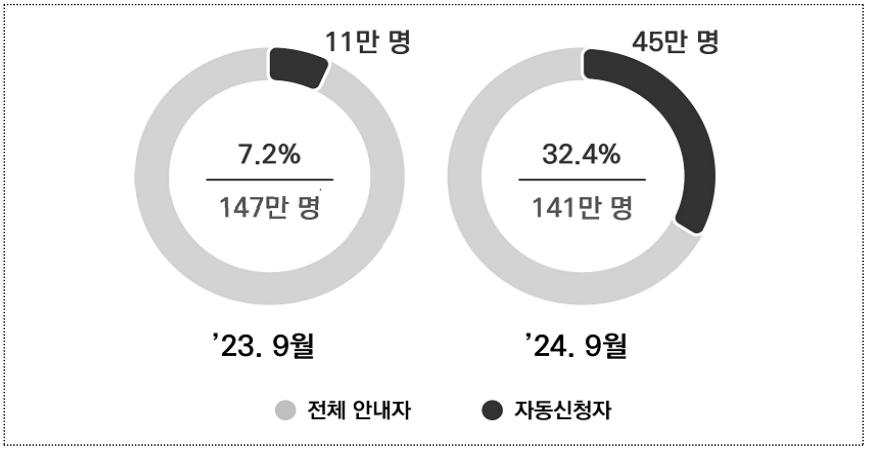

□ (상담편의 제고)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명 증원한 240명으로 운영합니다.

- o 올해부터는「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기능을 추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휴일에도 24시간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o 또한, 상담전화 증가로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하여 상담해 드리는「전화회신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 (유의사항) 안내문의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o 또한,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참고 1 신청 안내 현황 및 신청 대상

□ 신청 안내 현황

- o 가구 유형별

(천 가구)

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1,405	922	439	44

- o 연령대별

(천 가구)

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1,405	310	99	114	172	253	457

□ 신청 대상 : 아래 가구유형별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

참고 2 신청·지급 일정 및 지급액

□ 신청·지급 일정

» '24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구유형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부부합산)	재산 요건
	2023.12.31. 기준	2023년❹총소득 및 2024년❺연간 총급여	2023.6.1.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4만 ~ **2,200만원 미만**	❻가구원 전체의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 장려금 **50%만 지급**
홑벌이 가구	❶배우자,❷18세 미만 부양자녀, ❸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음**	4만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	600만 ~ **3,800만원 미만**	

❶ 총급여액 등 300만원 미만(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❷·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
❹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모두 합산
❺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
❻ 부동산, 승용차(지방세법상시가표준액),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 합계액
* 주택은 실 전세금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 전세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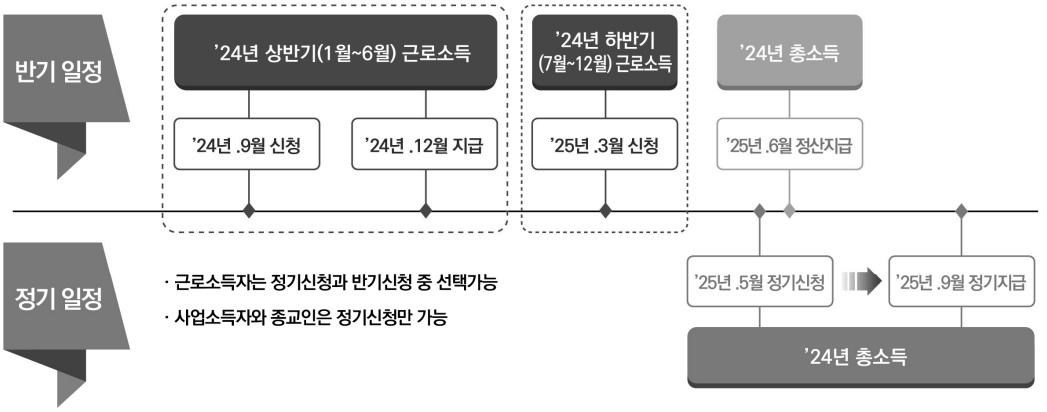

❶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 · 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

❷ 이번 2024년 상반기분 신청 시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❸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심사 후 12월 말 지급하며, 2024년도 소득이 모두 확정된 다음 연도 6월 말에 정산(연간산정액-기지급액)

※ 상반기분 신청 시‘예상 연간산정액’은 정산 시‘연간산정액’과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가구·소득·재산요건에 따라 기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음

□ 근로장려금 지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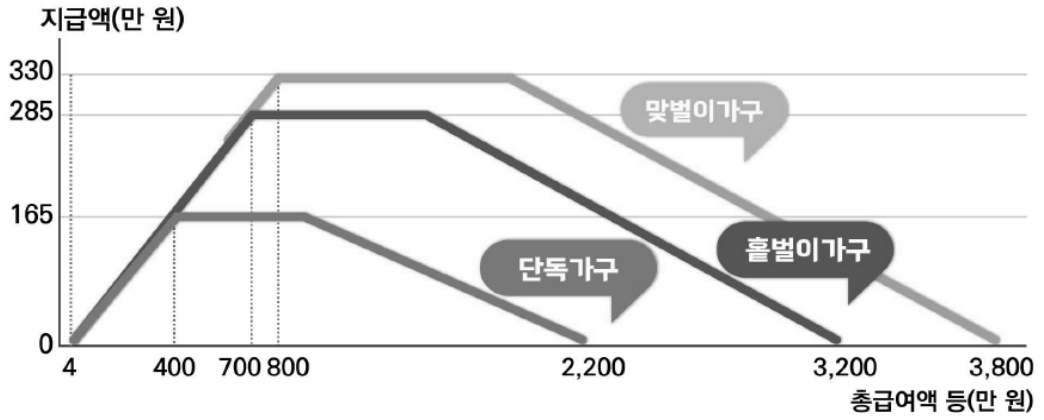

참고 3 신청 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모바일 안내문

신청하기 버튼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전화·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② 우편 안내문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 인식,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버튼 눌러 신청 완료)

③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④ 신청대리

□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o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요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o 스마트폰 또는 PC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경로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참고 4 반기분 근로장려금 주요 문답 사례

사례 1 상반기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반기 총급여액 등은 연간 환산근로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상반기 총급여÷근무월수)×6
-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사자, 일용근로자 : 상반기 총급여×2

* 계속근로자는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입니다.
* 근무월수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합니다.

사례 2 올해 12월말에는 얼마나 지급받나요?

○ 장려금 연간산정액(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의 35%를 지급하고,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유보하여 다음 해 6월 정산합니다.
- 재산가액 또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변동되어 다음 해 6월 정산시 환수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5% 지급 혹은 지급유보합니다.

사례 3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고 하반기에 가구원이 변동되면 어떻게 하나요?

○ 신청 시의 가구원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가구원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다음 해 6월 정산 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지급액을 재산정하여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24년 귀속 반기 신청시 가구원 기준일 : '23.12.31
정산시 가구원 기준일 : '24.12.31

자녀장려금 전년보다 2.3배 많은 81만 가구 혜택

- 국세청, 2024. 9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빠른 8월 29일에 지급합니다.

o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증가한 299만 가구이며, 금액은 3,431억 원이 증가한 3조 1,705억 원을 지급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입니다.

o 올해는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81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부부합산 4천만 원 → 7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 1인당 80만 원 →100만 원

□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PC)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약자를 위한 복지세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1 '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근로장려금은 지난해와 유사한 218만 가구에 2조 3,836억 원을 지급하며, 자녀장려금은 지난해보다 45만 가구가 많은 81만 가구에 7,869억 원을 지급합니다.

(만 가구, 억 원)

합 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299	31,705	218	23,836	81	7,8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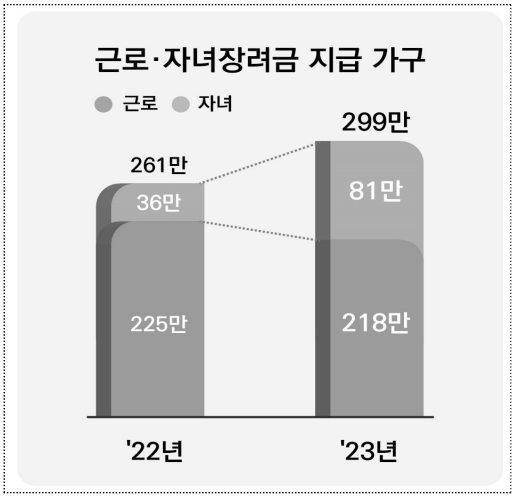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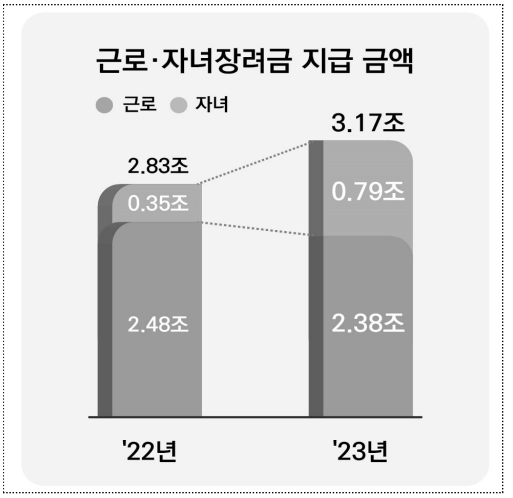

□ 가구 유형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단독가구가 153만(51.3%)으로 가장 많고, 홑벌이 105만(35.1%), 맞벌이 41만(13.5%) 가구 순이며, 연령별은 20대 이하(23.9%), 40대(23.3%), 30대(18.5%), 60대 이상(18.1%) 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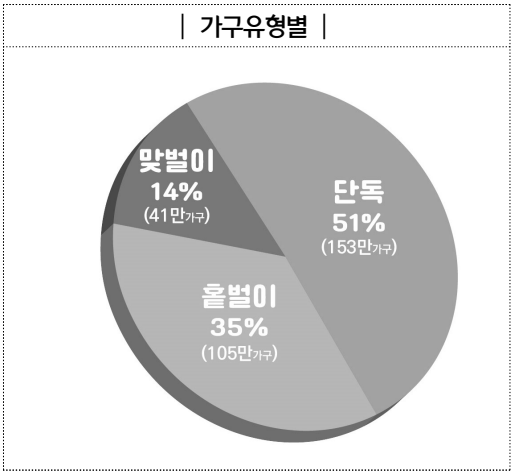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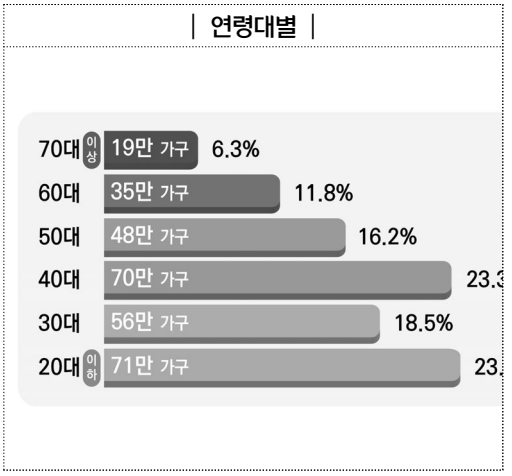

2 심사결과 확인 방법

□ 결정통지서 및 환급통지서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

○ (모바일) 장려금 신청 시 결정통지서 전자송달에 동의한 자로서 계좌 수령으로 신청한 경우 심사결과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 (우편) 현금 수령으로 신청한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등기우편[1]으로 발송되며,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등에서도 출력[2]이 가능합니다.

1) 우편물 발송에 통상 2~3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로그인 >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 우편물보기)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기타 확인 방법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상담센터와 세무서 대표전화에「보이는 자동응답」기능을 도입함으로써 상담이 밀리는 기간에도 지급액 등 궁금한 사항을 더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 홈택스(모바일, PC)에 아래의 경로로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 모바일 :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
- PC : My 홈택스 → (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장려금·학자금상환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에 전화하여 아래의 경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 지급결과 확인
-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근로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지급결과 확인
- (운영기간) '24.8.29.~9.19.

3 장려금 수령 방법 및 유의 사항 안내

□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8월 29일에 신고한 금융계좌로 입금됩니다.

○ 장려금 수급 방법을 현금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인 수령도 가능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금융자료 등 자료를 추가 수집하여 심사하므로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이 달라지거나,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기준*과 해당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한 재산기준(2.4억 원 미만)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 2천2백만 원, 홑벌이 3천2백만 원, 맞벌이 가구 3천8백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7천만 원 미만

- 다만, 가구원의 재산을 모두 합산한 가액이 1.7억 원 초과 2.4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지급되며, 체납액이 있는 경우 30%를 충당 후 지급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을 부당하게 신청한 수급자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홈택스를 통하여 장려금 부정수급자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제도 확대에 편승한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국민의 세금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올해 10월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 홈택스(로그인)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 제보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 구체적인 증빙을 첨부하여 제보하여 주시면, 관할 세무서에서 현장확인 등을 거쳐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 또는 5년간 환급을 제한*합니다.

* (2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5년) 사기 등 기타 부정한 행위

세금포인트와 함께 산림 휴양·생태 체험을 떠나보세요

- 국세청, 2024. 8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9월 2일(월) 산림청(청장 임상섭),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류태철)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산림청 산하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입장료 없이 산림 휴양을 즐길 수 있으며,

I* 주요 국립자연휴양림 *I

- ▸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경기 양평) : 국가산림문화자산인 자생식물원 등 보유
- ▸ 아세안국립자연휴양림(경기 양주) : 수도권 1일 생활 관광지로 계곡과 저수지 위치
- ▸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전북 군산) : 신시도 앞바다 단풍 절경과 함께 휴식처 제공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전남 목포)에서 입장료 1천원을 할인받아 담수 생물, 섬·연안 지역 생물 등 생물자원을 주제로 한 전시를 관람하고 생물다양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전시 체험 및 교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입장료 면제·할인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문화·여가 할인 쿠폰을 발행하여 입장 시 직원에게 쿠폰을 제시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My홈택스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혜택 〉 모바일 쿠폰 바로가기 〉 문화·여가 할인 쿠폰

I 모바일 쿠폰 사용처 I

문화 · 여가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세종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경주시 사적지,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국립자연휴양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쇼핑	· 행복한 백화점(중소기업유통센터)

□ 이번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국민들이 자연과 한층 친숙해지고 산림·생물자원 등을 보유한 지역의 방문객이 증가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 1 **세금포인트 제도 개요**

구 분		내 용
세금포인트 부여	대상	모든 개인납세자 또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세목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여 기준	자진납부세액 10만원당 1점
세금포인트 사용처	쇼핑	•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개인·법인) -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
		•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행복한 백화점 (개인·법인) -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상당 할인 구매 모바일 쿠폰

	문화·여가	•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개인) - 사무·휴식 공간 및 납세지원 서비스 제공	
		•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할인 (개인) - 기획·특별전시 관람료 10% 할인 제공	모바일 쿠폰
		• 국립세종·백두대간수목원·한국자생식물원 관람료 (개인) - 수목원 관람료 1천원 할인 제공	모바일 쿠폰
		• 국립생태원·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할인 (개인) - 생태원·자연휴양림 입장료 1천원 할인 제공	모바일 쿠폰
		• 경주시 사적지 등 관람료 할인 (개인) - 사적지 등 10곳 관람료 1천원 할인 제공	모바일 쿠폰
		• 국립해양·낙동강·호남권생물자원관 관람료 할인 (개인) - 자원관 관람료 1천원 할인 제공	모바일 쿠폰
	세정 지원	•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신청 시 납세담보 면제 (개인·법인) - 납세유예 신청 시 최대 5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1p당 10만원)	
		•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개인·법인) - 1천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압류재산 매각유예(1p당 10만원)	
		•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개인) -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수출 지원	•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제공 (법인) -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연간 1회 무상 제공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화명	8월 30일 (금)	9월 2일 (월)	9월 3일 (화)	9월 4일 (수)	9월 5일 (목)
미달러 (USD)	1335.30	1334.80	1338.80	1341.00	1342.00
일본 엔 (JPY)	921.75	910.69	911.12	923.43	934.22
영국파운드 (GBP)	1757.99	1752.79	1759.18	1758.12	1764.19
캐나다달러 (CAD)	990.10	989.58	991.70	990.03	993.63
홍콩달러 (HKD)	171.25	171.16	171.71	171.94	172.13
위안화 (CNH)	187.56	188.35	188.54	188.31	188.78
유로화 (EUR)	1479.58	1474.35	1481.45	1481.27	1487.41
호주달러 (AUD)	907.67	903.93	908.71	900.01	902.09
싱가폴달러 (SGD)	1024.95	1021.90	1024.06	1026.56	1029.54
말레이시아링기트 (MYR)	309.74	308.95	307.42	307.04	308.29

혹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나요?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 고용노동부, 2024. 9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도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 익명 제보도 가능하나, 이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 (제외)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

**(지급제한기간) 1년 범위 내에서 그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정함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무기간 · 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하여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수급)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이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10~12월)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노·사가 함께 기여한 보험재정을 남용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실업급여 · 고용장려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된다"라고 설명하였다.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인 고용보험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참고 1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FAQ

1. 자진신고나 제보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국민신문고)이나, 팩스, 우편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조사부서 방문 등 모두 가능합니다.

ㅇ 제보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나, 익명 신고의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보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및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진해서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나요?

□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을 공모했거나 과거 부정수급을 한 경우 등이 아닌 부정수급액·처분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ㅇ 부정수급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ㅇ 부정수급 행위가 일시적으로 발각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 등 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국가전산망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제보, 탐문 등에 의해 반드시 발각되어 제재를 받게 되니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3.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 급여를 지급받으면 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급여 전액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2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개요

□ 지급대상

ㅇ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를 신고한 자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7조)

□ 지급기준

ㅇ 신고내용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신고한 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8조)

구분	포상기준	상한액 및 연간 지급한도	하한액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	500만원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000만원)	1만원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등	부정수급액의 20%	500만원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액의 30%	3,000만원	

□ 지급제한

ㅇ 신고한 내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미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

① 언론매체에 의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② 공무원(직업안정기관에 두는 민간직업상담원 등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③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④ 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⑤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⑥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